

제 호

## 관제자격증명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행정처분	처분자격증명		자격증명번호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철도안전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7에 따라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격증명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유의사항

1. 관제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 ④ 행정처분란의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3. 관제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